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항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좌석수를 별도로 명시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용 목적에 한하여 승객 좌석수 기준을 최대 80석(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 5만6천킬로그램 이하) 이하로 상향하며,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 및 80석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으로 함(안 별표2 개정)

이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51석”을 “81석”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25,000킬로그램”을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6,000킬로그램,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25,000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기존에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기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항공기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80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 초과 5만6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2) 개인 :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나. 승객 좌석 수가 10석 이상 50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초과 2만5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22억5천만원 이상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11억2,500만원 이상
2. 항공기	가. 대수 : 1대 이상 나. 능력 1)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해상 비행 및 국제선 운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다만,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간시계비행 조건으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좌석수 승객 좌석수가 80석 이하(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 6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일 것(단,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 80석 이하 또는 2만5천킬로그램 초과 5만 6천킬로그램 이하인 항공기의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한다)
3. 기술인력	가. 조종사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 따라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인 경우와 비행선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를 말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나. 정비사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대기실 등 이용객 편의 시설	가. 대기실, 화장실, 세면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공항 또는 비행장의 대기실에 시설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는 것 나. 이용객 안내시설
5. 보험가입	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 다만, 여객보험, 기체보험, 화물보험 및 전쟁보험은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223